

의안번호	2216127
의 퇴 인	박민규 의원
회 답 일	2026.1.30.
추 계 번호	26E0254
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수도권주택 매각 후 비수도권으로 거주이전 시 연금계좌 추가납입
허용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59조의3제3항·제5항(연금계좌세액공제)	○ 연금계좌(연금저축+IRP) 연간 납입한도(1,800만원) 외 추가납입 대상 확대 - (추가납입 요건) ① 수도권 소재 주택을 양도하고 비수도권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후 상시거주할 것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추가납입 대상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에 납입할 것 - (추가납입 대상) (수도권 소재 주택 양도가액) - (수도권 주택을 대체하여 취득한 비수도권 소재 주택의 취득가액(미취득 시에는 0으로 함)) - (추가납입 한도) 6억원	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57조의3 제3항·제5항(연금계좌세액공제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은 수도권주택을 양도하고 이를 대체하여 비수도권주택을 취득하거나 취득하지 아니하고 비수도권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상시거주하는 경우 수도권주택 양도가액에서 비수도권주택 취득가액을 뺀 금액(이하 “주택차액금액”이라 함)을 최대 6억원까지 연금계좌에 추가납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, 소득세수의 감소가 예상됨

- 연금계좌(연금저축계좌+IRP)의 연간 납입한도는 1,800만원으로, 일반 은행·증권계좌 등과 비교하였을 때 운용수익에 대한 과세이연 및 저율과세의 이점이 있음(「소득세법」 제20조의3 및 제129조)
 - － 가령, 일반 은행·증권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에 대하여는 14%의 이자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만, 연금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에 대하여는 이를 연금소득으로 보아 추후 연금 형태로 수령할 때(과세이연) 3~5%의 낮은 세율로 원천징수(저율과세)됨
 - 6억원 한도 주택차액금액의 연금계좌 추가납입을 허용할 경우 해당 금액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(이자, 배당 등)에 대하여는 일반계좌와 비교한 과세이연 및 저율과세가 적용되므로 소득세수의 감소가 예상됨
 - 그 밖에 연금계좌 연간 납입한도 최대 900만원까지에 대하여는 근로소득 또는 총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12% 또는 15%의 세액공제가 적용되므로(「소득세법」 제59조의3), 주택차액금액을 연금계좌에 추가납입하는 사람의 기존 연금계좌 납입금액 규모 등에 따라 연금계좌세액공제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어 그에 따라 추가적인 소득세수의 감소도 발생할 수 있음
- 개정안에 따른 추계를 위해서는 수도권주택을 매도하고 비수도권으로 주거를 이전한 사람 및 해당 인원의 주택차액가격 현황, 주택차액가격에 상응하는 투자금액에서 발생하는 금융수익 추이, 주거를 이전한 사람의 연금계좌 기 납부금액 및 소득세 납부현황 등에 관한 자료가 필요하나, 해당 정보 및 자료의 습득이 곤란하여 합리적인 추계에 어려움이 있음

Ⅲ. 부대의견

☐ 없음

Ⅳ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1과	신홍철	박연서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신홍철	02-6788-4745	hongfe@assembly.go.kr